
문서번호 : 11-04-사무-05
수 신 : 제 언론 및 단체
발 신 :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
제 목 : [논평] 서울행정법원 '한예종 심광현 교수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 판결'을 환영한다.
전송일자 : 2011. 4. 12.
전송매수 : 총 2쪽

[논평] 서울행정법원 한예종 심광현 교수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판결을 환영한다

서울행정법원 제12부(장상균 부장판사)는 최근 '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2009. 12. 23. 영상원 영상이론과 심광현 교수에 대하여 내렸던 '정직처분을 취소하라'는 판결을 선고하였다.

그 요지는 '한예종총장은 심광현 교수가 한예종 미래교육단장으로 임명되어 U-AT 통섭교육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성과 부실로 국가예산낭비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시거부, 인센티브부당지급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,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하였으나, 그 근거가 되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정직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.'라는 것이다.

특히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008. 취임직후 황지우 전 총장에게 '예술학교의 통섭교육사업을 재검토하라'라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심교수가 위 지시를 어기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는지에 대하여, 법원은 '오히려 기존에 문화부, 기획예산처 등 유관기관을 거쳐 국회로부터 45억원의 예산까지 책정받았던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방적인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총장의 교육과정 편성권한이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로 볼 수 있다.'라고 판시하여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적절한 지적을 하였다.

위 판시내용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권한은 대학의 총장에 있고, 그 연구 및 교육내용은 그 대학에서 자치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으며, 이에 대한 정부나 교육당국의 외부적인 간섭이나 지시는 월권행위로서 위법한 것임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준 의미를 가진다.

예술 분야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 교육 기관인 한예종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예종의 갈등, 그 과정에 황지우 전 총장의 총장직 사퇴, 심광현 교수에 대한 징계등 지난 2년 여 간의 분쟁은 위 판결로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.

다시 한번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.

2011. 4. 12.

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

회장 김선수

